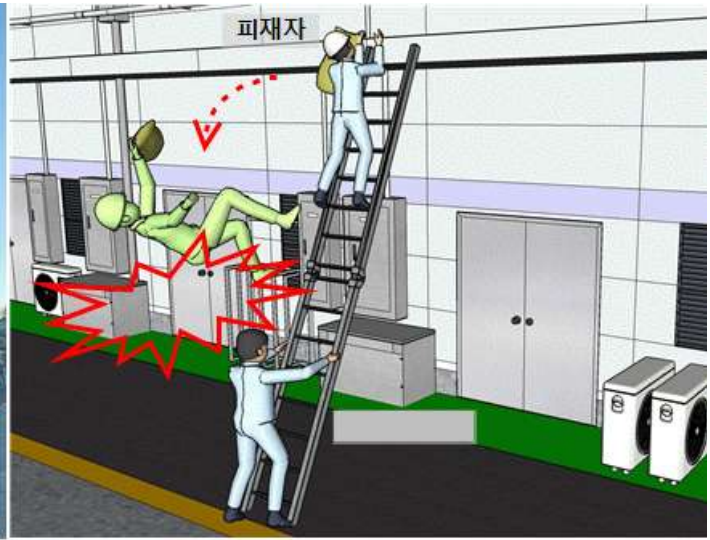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2. 09. 16.(금) 09:00경, 대전 △△구 소재 「○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피재자가 방수공사 전 청소작업을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2m 하부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·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사다리식 통로 설치 미흡**
 - 3.9m 높이의 방수작업을 위한 승강설비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손상·변형 등이 없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, 손상·변형이 있는 사다리를 설치하여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함
-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**
 -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,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음



재해 예방 대책

- 견고한 구조의 사다리식 통로 설치**
 - 높이 2m를 초과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승강설비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경우 손상 변형 등이 없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
-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**
 -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